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정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867

발의연월일: 2022. 3. 8.

발 의 자:김정재·김용판·박대수

이 용・송석준・한무경

김성원 · 추경호 · 김영식

金炳旭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관할 구역의 읍·면·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·운영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인구밀집지역 또는 읍·면·동의 관할구역이 넓은 농촌지역 등에서는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장시간 대기하거나 먼 거리를 이동해 야 하는 문제가 있음.

이에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때는 인구 및 면적 등을 고려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관할구역의 읍 ·면·동마다 1개소 이상씩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62조제2항 및 제148조제1항). 법률 제 호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2조제2항제1호 중 "제14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"을 "읍 •면·동이 설치·폐지·분할·합병되어 관할구역의 총 읍·면·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에는"으로 한다.

제1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1개소씩"을 "1개소 이상의"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.

이 경우 사전투표소의 설치 기준은 인구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第62條(選舉事務關係者의 選任) 第62條(選擧事務關係者의 選仟) ① (생략) ① (현행과 같음) ② 選舉事務長 또는 選舉連絡 所長은 選舉에 관한 事務를 처 리하기 위하여 選擧運動을 할 수 있는 者중에서 다음 各號에 의하여 選擧事務員(제135조제1 항 본문에 따른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는 선거사무원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둘 수 있다. 1. 大統領選舉 選擧事務所에 市・道數의 6 倍數 이내와 市・道選擧連絡 所에 당해 市・道안의 區・市 ·郡(하나의 區·市·郡이 2 이상의 國會議員地域區로 된 경우에는 國會議員地域區를 말한다. 이하 이 項에서 같 다)數(ユ 區・市・郡數 10 미만인 때에는 10人)이내 및 區・市・郡選擧連絡所에 당해 ---<u>읍·면·동이</u>설치·폐지 (제14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 ·분할·합병되어 관할구역의

는 경우에는 설치·폐지·분 할·합병 직전의 읍·면·동 을 말한다. 이하 이 조, 제67 조제1항, 제118조제5호 및 제 121조제1항에서 같다)수 이내 2. ~ 8. (생 략)

③ ~ ⑧ (생 략)

제148조(사전투표소의 설치) ① 7 · 시 · 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(이하 "사전투표기간"이라 한다) 관할구역(선거구가 해당 구·시 · 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다)의 읍·면·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·운영하여야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추가로 설치·운영할수있다.

 1. 읍・면・동 관할구역에 군부

 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

 2. 읍・면・동이 설치・폐지・

 분할・합병되어 관할구역의

 총 읍・면・동의 수가 줄어든

총 읍 • 면 • 동의 수가 줄어든
<u>경우에는</u>
2. ~ 8. (현행과 같음)
③ ~ ⑧ (현행과 같음)
제148조(사전투표소의 설치) ① -
<u>1개소 이상의</u>
<u><삭 제></u> 이 경우 사전투
표소의 설치 기준은 인구 및 면
적 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
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
<u><삭 제></u>

<삭 제>

<u>경우</u>

- 3. 읍 면 동 관할구역에 「감 | <삭 제>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3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감염 병의심자 격리시설이 있는 경 우
- 4. 천재지변 또는 전쟁·폭동, <삭 제>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 하여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 치 ·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관 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가 인정하는 경우

② ~ ⑥ (생 략)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